

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과천시 중앙동 67번지 일원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7. 8.

과 천 시 장


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개요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 기한	비고
당초	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	중앙동 67번지 일원	102,100.0	2016.11.21.	2024. 8. 9.	2년 연장
변경					2026. 8. 9.	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 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과천시 도시정비과 주거정비2팀(☎02-3677-2656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끝.